뇌물공여·뇌물수수

[인천지방법원 2005. 2. 17. 2004고합603]

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박정식외 1인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안재극외 23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.

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46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.

압수된 1만 원권 지폐 20,000매(증제1호)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.

피고인 2는 무죄.

【이유】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

[이유]

1

[이유]

1